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194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욱

변론 종결2022. 12. 15.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2018. 3. 8.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은 2억 53,371,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표에 기하여 가지는 37,449,483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세입세출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2016. 1. 6.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E(F생)이며, G(H생)은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자이고, 피고(I생)는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와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자이다.

나. 부동산의 매매 등

- (1) 피고는 2013. 10. 10. 분할 전 모토지인 경북 울진군 K 대 3,571m²에 관하여 2013.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위 분할 전 모토지는 2014. 6. 5.경 경북 울진군 K 대 1,7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와 나머지 9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17. 3. 10. L 외 3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총 8억 8,230만 원1)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3)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9. 18.경 '경북 울진군 K 대 681m²', 'M 대 288m²', 'N 대 668m²', 'O 대 76m²', 'P 대 4m²'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K 토지' 등 지번으로 개별 필지의 토지를 특정함), 위 5필지 토지는 2017. 9. 29.자로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원고 등에게 그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1	K	피고	원고(1/2), 소외 회사(1/2)	2017. 9. 1. 매매	350,000,000원
2	M	피고	Q(1/1)	2017. 9. 1. 매매	148,000,000원
3	N	피고	소외 회사(1/1)	2017. 9. 1. 매매	384,300,000원
4	O	피고			
5	P	피고			

다.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와 J는 2017. 9. 27. 공증인 R에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증서 제2017년 제1291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함)의 내용은 [별지2-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공정증서상의 차용금액은 3억 3,230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은 2017. 12. 30.까지, 나머지 2억 3,230만 원은 2018. 3. 15.까지 각 변제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피고이고, 채무자는 J이며, 연대보증인은 G, Q, 원고, E이다.

(2) 피고와 소외 회사(대리인 : G)는 2018. 3. 8. 공증인가 법무법인 S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증서 제2018년 제105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함)의 내용은 [별지2-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2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은 3억 원이고, 변제기는 2018. 3. 20.이며, 채권자는 피고이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다.

(3) 피고와 소외 회사(대리인 : G)는 2018. 2. 2. 공증인 R에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증서 제2018년 제131호, 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2-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3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은 6,000만 원이고, 변제기는 2018. 2. 22.이며, 채권자는 피고이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다.

(4) 원고와 소외 회사(대리인: G)는 2017. 12.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T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위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증서 제2017년 제395호, 이하 '이 사건 제4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채권액은 2억 5,300만 원이고, 변제기는 2017. 12. 16.이며, 채권자는 원고이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다.

라. 배당표의 작성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 제447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로 배당절차(채무자 : 소외 회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함)가 작성되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가지는 37,449,483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하라는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0. 8. 1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2508호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9,040,909원 및 37,449,483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배당된 배당액 31,625,442원을 78,115,834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함)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서 주장한 사항 중에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1. 6.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C 감사 G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 공정증서를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삼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위 공정증서는 토지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는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외 G 등과 2017년 증서 제1291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증서 제105호 공정증서(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1.경 "2017. 9. 27.경

잔금채무에 대한 공정증서(이 사건 제1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분필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C가 직접 연대보증인이 되지 못하여, 이후 2018. 3. 8.경 채무자를 주식회사 C로 한 공정증서(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입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전소는 2021. 5. 13. 변론종결되고, 2021. 7. 22. 이 사건 제2공정증서가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2022.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2공정증서의 작성 근거가 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다음 2022.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2020. 8. 18.경이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전달받은 2020. 11.경에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5. 1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천종호

별지

1) 계약금 8,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억 4,000만 원(지급기일 2017. 5. 22.), 잔금 4억 6,230만 원(지급기일 2018. 2. 28.)

2) 거래가액의 합계액은 882,300,000원이다.